

I.개 요

1. 사 업 소 개 요

1.1 개요

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공단의 심의를 거친 복지용구 중 우수한 제품을 판매 또는 임대를 통하여 서비스 하고, 수급자들의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나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프라구축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한다.

1.2 위치

경남 거제시 연초면 연사3길 7 (경남 미래애텍)
TEL : 055-636-5898 / FAX : 055-636-5862

2. 복지용구 급여품목

구입전용 품목(11종)	구입 또는 대여 품목(8종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비교적 저렴한 품목- 타인이 재사용하기에 저항감을 갖는 품목-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품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비교적 고가의 품목- 소독 등을 통해 타인이 재사용하는 큰 문제가 없는 품목-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품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① 이동변기② 목욕의자③ 성인용보행기④ 안전손잡이⑤ 미끄럼 방지용품 (미끄럼방지매트, 미끄럼방지액, 미끄럼 방지양말)⑥ 간이변기(간이대변기·소변기)⑦ 지팡이⑧ 욕창예방 방석⑨ 자세변환용구⑩ 요실금팬티⑪ 욕창예방 매트리스 ⑫ 경사로(실내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① 수동휠체어② 전동침대③ 수동침대④ 욕창예방 매트리스⑤ 이동욕조⑥ 목욕리프트⑦ 배회감지기⑧ 경사로

3. 복지용구 이용 및 공급 절차

서 비 스 절 차	내 용
1. 복지용구 방문상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급자 및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 • - 장기요양급여 인정서 제출 • 수급자 중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여야 함 • (장기요양기관 입소·이용의뢰서를 사업소로 통보)
2. 급여가능 여부조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복지용구사업소 • - 인터넷 및 유선으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가능 여부를 조회 (공단 포털 또는 지사) • - 수급자가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·이용의뢰서 확인
3. 복지용구 제공 계약 체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복지용구사업소·수급자 • - 계약체결(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를 수급자에게 발급하고, 1부는 보관) • - 급여계약서(예시문 복지용구 자료실 참조, 동 서식은 포털에서 계약내역 등록 후 출력가능) • 복지용구 사업소 • -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 • - 복지용구 제공 • - 복지용구사용방법, 사용상유의사항, 고장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
4. 계약체결 내역 통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복지용구 사업소 • - 공단포털(복지용구 계약내역서 등록화면)에 직접등록 • - 또는 모사전송으로 지사에 통보 (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) • -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
5.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복지용구 사업소 • - 인터넷 청구 • - 전산매체 청구(공단본부) • 복지용구 사업소 • - 등록된 계약내역만 심사 지급

II.운 영 기 준

1. 복지용구의 급여비용 산정 (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)

1.1 급여비용 본인부담율

일반대상자 : 15%

경감대상자 : 9%, 6%

기초생활수급자 : 본인부담금 없음

1.2 급여 종류 및 급여비용 연간한도액

급여의 종류는 구입과 대여제품으로 구분되어져 있으며, 그내용은 급여품목의 표과 같다.

급여비용 연간한도액 :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, 한도액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(연간한도액 160만원)

연간한도액 계산방법 : 복지용구급여비용(공단부담액+본인부담액)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한도액을 초과하면,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

1.3 급여기준

복지용구를 구입하는 경우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내구연한 내에서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할 수 있다. 다만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본다.

구입제품의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별도의 『복지용구 훼손여부 확인 신청서』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.

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가 가능하며, 또한 동일한 품목을 구입한 후에 대여하거나 대여기간 중 구입을 할 수 없다.

1.4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가격 산정 방법

①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,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,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. 다만 전체 대여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대여가격의 1/3을 산정한다.

②. 복지용구 구입가격 또는 대여가격에는 배송비, 설치·철거비, 수리 및 부품 등의 교체료, 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하지 않는다.

③. 수급자가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한다

1.5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.

계약기간 : 구입품은 판매와 동시에 계약이 성립되고, 판매일자와 계약기간은 동일하다.

대여품은 인증기간내에서 소비자와 협의 하여 작성한다.

계약의 목적 : 계약은 소비자와 복지용구 사업소의 서비스 또는 물품에 대한 내용을 증명하고, 확인하기 위해 작성한다.

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: 대여제품의 월이용료는 소비자와 복지용구 사업소가 협의 하여 납부/수급하며, 이용도중 반납될시에는 (1.4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가격 산정 방법)에 따른다.

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:

신원인수인의 권리

-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.

-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.

-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.

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

신원인수인의 의무

-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.

-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.

-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.

-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.

-수급자가 병원 입원시, 간호 및 간병, 입퇴소절차,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.

계약의 해지: 소비자는 정당한 사유로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며, 복지용구 사업소는 해지에 대한 의사를 듣고 지체없이 계약에 대한 해지를 이행하여야 한다.

2. 물품 항목 및 구분 (제품안내에 관한 사항)

2.1 구입 전용 품목(구입만 가능함) : 12개 품목

- ① 이동변기 : 화장실로 이동하기 어려운 분에게 대·소변을 처리할 수 있는 도구
- ② 성인용보행기 : 스스로 보행이 가능한 분들이 실내 또는 외출시 보행 등에 이용
- ③ 목욕의자 : 목욕 시 대상자의 자세유지 및 편안한 목욕 실시
- ④ 안전손잡이 : 수발자의 노고를 줄이고 어르신들의 자립환경을 조성
- ⑤ 미끄럼 방지용 : 실내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여 사고를 예방
- ⑥ 간이변기(간이대변기·소변기) :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용변을 해결
- ⑦ 지팡이 :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보행 보조
- ⑧ 욕창예방 방석 : 장시간 앉아 있을 때 욕창을 방지
- ⑨ 자세변환용구 : 장시간 누어있는 분들의 자세 및 위치를 변환
- ⑩ 요실금팬티 : 노인성질환이나 기능저하로 인하여 소변이 조금 비칠 때 사용
- ⑪ 욕창예방 매트리스 : 체중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여 욕창을 예방해 줌
- ⑫ 경사로(실내용) : 실내의 단차를 해소하여, 이동에 편의를 제공

2.2 대 여 품목 : 8개 품목

- ① 수동휠체어 : 보행이 불가능 하거나 장시간 보행이 곤란한 경우 이용

- ② 전동침대 : 일어서는 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
- ③ 수동침대 : 일어서는 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
- ④ 욕창예방 매트리스 : 체중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여 욕창을 예방해 줌
- ⑤ 이동욕조 : 이동이 어려운분들의 실내 입욕을 할수 있게 지원.
- ⑥ 목욕리프트 : 목욕탕의 입욕시 편안한 자세유지 및 입욕 지원.
- ⑦ 배회감지기 : 치매로 인하여 배회할 때 위치를 추적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
- ⑧ 경사로 : 계단 이용이 어려워서 단차 극복을 위해 이용.

3. 대여품 세척 및 소독 (제품 소독에 관한 사항)

위탁 처리하는것을 기본으로 하고, 위탁 관리자를 선임하여 대여품의 반납과 함께 빠른 시간 내에 세척 / 소독 될수 있도록 처리한다.

차후 위탁을 하지 않을 경우 대여품에 대한 세척 및 소독에 대한 관리자를 선임하고, 복지용구 소독 관리 지침에 상응하는 공간과 소독 시설을 확보하여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여, 대여품의 위생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.

4. A/S 관리 (제품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)

- ① 제품의 하자 및 배송상의 물품 손상으로 인한 A/S발생시 지체없이 신제품으로 교환.
-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하자의 경우 1년간 무상 서비스를 실시하며, 사용자 과실로 인한 사항은 유상 서비스 실시.
- ③ A/S 기간 : 복지용구 품목등록 기준에 준함.
- ④ A/S 발생시 유통망을 통한 제조사에서 처리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, 제조사의 A/S를 지원함.

4.1. 제품 유통에 관한 사항(제품 유통에 관한 사항)

임대제품의 배송은 수급자와 협의하여 진행하며, 통상 1주일 이내의 날짜로 선정한다.

판매제품의 배송은 없으며, 매장판매를 원칙으로 하나, 소비자와 여건에 따라 협의한다.

제품의 재고는 늘 갖추고 있어야 하며, 부득이할 경우 최대한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.